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 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2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오탈자를 수정하고, 주민수요를 기반한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**오탈자 수정(제2조제3항)** “**없**는”을 “**있**는” 으로 수정

- “동물학대”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**있는**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,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나. **동물복지위원회 설치·운영(제9조의2) 신설**

-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복지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동물복지계획 수립
  2. 동물의 학대방지,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
  3. 동물보호센터의 지정
  4.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
 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
  2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
 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·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5.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

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동물보호·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- ⑨ 위원의 해촉·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도심산업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산업과, 전화 : 02-3396-5072, 팩스 : 02-3396-8682, email : ws200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555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

**제2조(정의)3.** “동물학대”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,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제9조의2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동물복지계획 수립
2. 동물의 학대방지,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
3. 동물보호센터의 지정
4.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
  2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
 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·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5.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동물보호·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- ⑨ 위원의 해촉 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.